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우리군 철마면 장전리 113-1번지 및 589-1번지 상(시유지)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반 시설물(가건물, 경작물, 펜스등) 소유자(행위자)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7일

기 장 군 수



1. 공고사항 :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7. 17 ~ 2020. 8. 31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
  - 가. 위 치 :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113-1번지 및 589-1번지 일원
  - 나. 행 위 자 : 미 상
  - 다. 주 소 : 미 상
  - 라. 위반사항 : 공유지내 시설물 설치 (상세내역: “별 첨”)
4. 게시장소 : 기장군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공고
5. 처분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 및 제99조(벌칙)
6. 계고내용 : “별 첨”

## [ 별 첨 ]

# 원상복구 명령 계고서

○ 주 소 : 미상

○ 성 명 : 미상

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113-1번지 및 589-1번지 공유지 내 행한 공작물 설치(가건물, 경작물, 펜스)행위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계고하오니 **2020년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(철거)**하시기 바랍니다.

만일 위 기일까지 원상복구(철거)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9조(벌칙)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 또는 종류       | 대집행 방법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113-1번지 및 589-1번지 일원 | 가건물, 경작물, 펜스 등 | 불법시설물 철거 |     |

2020. 7. 17.

기 장 군 수

